

의안번호	제 28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3월 12일 (제 307 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2년 2월 23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연월일 : 2012. 2. 2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원격교습과 진학상담·지도 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원격교습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규정함
(안 제2조제1항)
- 나.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른 조정과, 국토개발, 조정,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신설(안

제2조의4 별표1, 별표 2)

- 다. 지하실의 학원시설사용에 대한 규정 조문 변경(안 제2조의4 → 제2조의2)
- 라. 학원시설의 규제조항 삭제(안 제2조의4제5항)
- 마. 상위법 범명 및 조문 변동에 따른 정비
- 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 제한에 따른 예외(방학 중 허용) 문구 삽입(안 제2조의5제1항)
- 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규정 삭제(안 제2조의6)
- 아.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교습대상 확대(안 제2조의4제1항 별표1)
- 자.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2조의6)
- 차. 독서실 출입금지(24:00~04:00)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 타. 교습의 서면 중지명령 조항 삭제(안 제9조의2)
- 파. 종전의 우수학원 지정·육성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전체 조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12. 6 ~ 12. 29.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방학기간 교습 제한 완화 : 수용(안 제 2조의5)

○ 독서실 퇴실 금지 시간 완화 : 수용(안 제4조)

3) 규제심사 : 이견없음(기획관리과-6681, 2011.12.27)

4) 부패영향평가 : 이견없음(감사담당관-10042, 2011.12.29)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하고,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를“(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0항에 따

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2조제2항 중 “수강생에게”를 “학습자에게”로 하고, “보상”을 “배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학원설립·운영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교육환경 및”을 “교육환경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2제2호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원에 있어서는”을 “학원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체육시설(체육장)”을 “체육장(체육시설)”로 하고, 제6호의 “기타 교습 및”을 “그 밖에 교습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6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7호의 “보건위생상”을 “보건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실험·실습실은 단위면적이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

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제2항의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제3항의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을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를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으로 하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5와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5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해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⑤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⑧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를“(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으로 하고, 제1항 중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을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첨부하여”를 “붙여”로, “통보하여야”를 “등록하거나 알려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을 “학원에서”로 하고,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을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로 하며, “통보하여야”를 “등록하거나 알려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 본문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교육감이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을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의 중지), 등록 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정지와”로 하고, 제3호의 “상당하다고”를 “많다고”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우수학원의 지정·육성”을 “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우수학원을 지정·육성”을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육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과 그 밖에”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학원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보충학습, 논술	시지역 90㎡ 이상 군지역 6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9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 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시지역 120㎡ 이상 군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 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 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 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 용 기 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품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 노조율	"	
		산 업 서 비 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 비자전문상담,	60㎡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60㎡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 기 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경매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미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응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시지역 120㎡이상 군지역 60㎡이상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보통교과목을(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무용,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2조의4제3항 관련)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음악	1.음악	가. 시설 (1) 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6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명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베투,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무용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특수 교육	4.특수교육	가. 시설 (1)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1)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 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 기반	1.기계	가. 시설 (1) 설계실: 60㎡ 이상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기술		(2) 실습공장: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자동차 (2-1,자동차 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정비실습실: 60m ² 이상 (3) 기재실: 3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대 이상 (2) 디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2종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자동차 (2-2,중기운 전)	가. 시 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운전실습장: 990m ² 이상 (3) 기재실: 16.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1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금속 (귀금속가공)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1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터)1대 이상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2) 기재실: 15m ² 이상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전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2) 전기실: 3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통신 (6-1.유·무선통신)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파일통합장치 1대 이상 (2)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통신 (6-2.유·무선설비)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뎀(MODEM) 1대 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주파수 발전기 1대 이상 (5) 회로시험기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전자	가. 시 설	

계열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p>(1) 실습실: 60m² 이상 (2) 기재실: 15m²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공통기재</p> <p>가) 회로시험기 2 명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채커 1대 이상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p> <p>(2) 텔레비전과정</p> <p>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교전압계 1대 이상</p> <p>(3) 컴퓨터기기과정</p> <p>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p> <p>(4) 비디오과정</p> <p>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8.항공 (항공정비)	가. 시설	<p>(1) 강의실: 30m² 이상 (2) 정비실습실: 60m² 이상 (3) 기재실: 30m² 이상</p>	

계열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2) 엔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토목,건축	가. 시설 (1) 설계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명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1, 양재·한복)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명당 1대 이상 (2) 재봉기 2명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명당 1대 이상 (4) 재단대 4명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2,수예·자수)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가) 자수재봉기 1명당 1대이상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광업자원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구(진동측정기, 발파기, 누설 전류측정기 등)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국토개발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신설
13.농림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m ²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명당 1조 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m ²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4) 임업, 원예 과정에 필요한 교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해양		가. 시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계열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p>(1) 공통기준</p> <p>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p> <p>나) 환등기 1대 이상</p> <p>(2) 과정별 기준</p> <p>가) 갑판과</p> <p>①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p> <p>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p> <p>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p> <p>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p> <p>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p> <p>나) 기관과</p> <p>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p> <p>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p> <p>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p> <p>④ 펌프류(원심력, 기어식)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5.에너지		<p>가. 시설</p> <p>(1) 실습실: 60m²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6.환경		<p>가. 시설</p> <p>(1) 강의실: 30m² 이상</p> <p>(2) 실습실: 60m² 이상</p> <p>(3) 기재실: 30m²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대기, 수질과정</p> <p>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p> <p>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p> <p>(2) 자연환경과정</p> <p>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p> <p>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공예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안전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조경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 응용 기술	20.디자인	가. 시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실습실: 60m ²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능력인원 2명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나)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 일시수용능력인원 나) 쇼윈도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터 재봉틀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수업시 2명당 1대 마) 컴퓨터 재봉틀 1대 이상 바) 오버로크 1대 이상 사) 아이언(다리미) 1대 이상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21.이용·미용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가. 시설 (1) 실습실: 60m²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5조 이상 다) 파마기 2조 이상 라) 미안대(거울) 2조 이상 마) 샴푸대 1대 이상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1대 이상</p> <p>(2)피부미용과정 가) 마사지 침대 2대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p> <p>(3)메이크업, 네일아트 과정 가) 실습대(4인용) 2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5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2.식음료품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p>가. 시설 (1) 실습실: 60m² 이상</p> <p>나. 세부과정별 교구</p> <p>(1) 조리 가)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나) 오븐기 1대 이상 다) 급수시설</p> <p>(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마) 냉장고(500L이상)1대 이상 바) 급수시설</p>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3) 조주, 와인(소믈리에) 가) 진열대 1대 이상 나) 조주대 1대 이상 (4) 커피(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에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포장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24.인쇄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사진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2) 암실: 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2종 이상 (2) 확대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피아노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튜링햄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산업 서비스	27.속기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전산회계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전자상거래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자상거래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텔레마케팅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텔레마케팅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카지노딜러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2.도배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3.미장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4.세탁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일반서비스	35.애견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1인용 테이블 1대 이상 (2) 욕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장의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판 1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호스피스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 대 1조 이상 (2) 휠체어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항공승무원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m ²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컴퓨터	39.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가. 시 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1)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게임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명당 1대 (2) 프로그램 6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로봇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용 탁자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 관광	42.출판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출판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영상,음반	가. 시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실습실: 60m ²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영화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계열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가) 현상실: 10m ² 이상 나) 녹음실: 15m ²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방송	가. 공통 시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UN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UNIT) 1대 ③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SCOPE) 1대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 (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 기재실: 30m ²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CONSOL)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 (LINE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 (COLOR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p>(나) 녹음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재실: 30m²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조정실: 30m²이상 ㉡ 녹음 스튜디오: 30m²이상 ② 설비 및 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방송용 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ERDISKELECTRICGRAPHIC) 1대 ㉨ MULTI TRACK RECORDER 1대 ㉩ CASSETTE DECK 1대 ㉪ COMPACT DISK 1대 ㉫ 방송용음반작동기(TURNTABLE) 1대 <p>(다) 야외녹화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 (ENG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기조명기(SUNGUN) 1대 이상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함</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제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아나운싱·리포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p> <p>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p> <p>나) 실습실: 90m²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p>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p> <p>가) 시설</p> <p>① “가”목의 공통 시설</p> <p>② 기재실: 60㎡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p> <p>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3대 이상</p> <p>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ROADCASTING SATELLITE) 각1대</p> <p>④ 복호기(DECORDER) 1대 이상</p> <p>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AMP) 1대</p> <p>⑥ 음향분배기(AUDIO DIVIDERAMP) 1대</p> <p>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RATOR) 1대</p> <p>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p> <p>⑨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p> <p>⑩ 채널혼합기 1대</p> <p>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p> <p>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p> <p>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p> <p>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6.관광		<p>가. 시설</p> <p>(1) 실습실: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관광도서 30종 이상</p> <p>(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p>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캐릭터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캐릭터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간호 보조 기술	48.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30m ² 이상 (2)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20종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세트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 사무 관리	49.주산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예	50.국악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2) 주요 실습용 약기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51.무용 (전통무용,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서예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명당 1대, 먹가는 도구 1명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만화	가. 시설 (1)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명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모델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모델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마술(매직)	가. 시설 (1)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거울 (2) 오디오(20W 이상) 1대 이상 (3) 마술도구 5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1대 이상	
	56.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1)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오디오(100W 이상) 1대 이상 (2)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대 이상	

계열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바둑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공예 (종이접기,꽃 기예,꽃꽂이)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공예 교수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도예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도예 교수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미술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미술 교수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댄스 교수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연기 (연극,뮤지 컬,오페라 등), 모델	가. 시설 (1) 실습실: 60m ²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나) 음향기기 다) 조명장치 (2) 모델과정 가) 무대장치 나) 조명장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63.독서실	가. 시설 (1) 열람실: 시지역 - 120m ² 이상, 군지역 - 60m ² 이상 나. 설비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비고
		(1) 열람대 일시수용능력 1명당 1대 (2) 남·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제2조의5제2항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210㎡이상 나. 보건실: 33㎡이상 다. 휴게실: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100㎡이상 (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기숙사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안쪽의 면적): 수용예정인원×4㎡ 이상이며, 2층 침대 사용 시 2.5㎡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이상이며, 2층 침대 사용 시 3㎡]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용예정인원 X0.4㎡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table border="1" data-bbox="328 1317 1406 1937"> <thead> <tr> <th data-bbox="328 1317 587 1384">급식학생수</th> <th data-bbox="587 1317 1406 1384">면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8 1384 587 1451">50명 이하</td> <td data-bbox="587 1384 1406 1451">14㎡</td> </tr> <tr> <td data-bbox="328 1451 587 1496">51명~100명</td> <td data-bbox="587 1451 1406 1496">14㎡+0.14㎡×(급식학생수-50)</td> </tr> <tr> <td data-bbox="328 1496 587 1541">101명~150명</td> <td data-bbox="587 1496 1406 1541">21㎡+0.14㎡×(급식학생수-100)</td> </tr> <tr> <td data-bbox="328 1541 587 1585">151명~200명</td> <td data-bbox="587 1541 1406 1585">28㎡+0.14㎡×(급식학생수-150)</td> </tr> <tr> <td data-bbox="328 1585 587 1630">201명~250명</td> <td data-bbox="587 1585 1406 1630">35㎡+0.14㎡×(급식학생수-200)</td> </tr> <tr> <td data-bbox="328 1630 587 1675">251명~300명</td> <td data-bbox="587 1630 1406 1675">42㎡+0.14㎡×(급식학생수-250)</td> </tr> <tr> <td data-bbox="328 1675 587 1720">301명~600명</td> <td data-bbox="587 1675 1406 1720">49㎡+0.05㎡×(급식학생수-300)</td> </tr> <tr> <td data-bbox="328 1720 587 1765">601명~900명</td> <td data-bbox="587 1720 1406 1765">64㎡+0.04㎡×(급식학생수-600)</td> </tr> <tr> <td data-bbox="328 1765 587 1809">901명~1,200명</td> <td data-bbox="587 1765 1406 1809">76㎡+0.04㎡×(급식학생수-900)</td> </tr> <tr> <td data-bbox="328 1809 587 1854">1,201명~1,500명</td> <td data-bbox="587 1809 1406 1854">88㎡+0.04㎡×(급식학생수-1,200)</td> </tr> <tr> <td data-bbox="328 1854 587 1937">1,501명 이상</td> <td data-bbox="587 1854 1406 1937">100㎡+0.02㎡×(급식학생수-1,500)</td> </tr> </tbody> </table>	급식학생수	면적	50명 이하	14㎡	51명~100명	14㎡+0.14㎡×(급식학생수-50)	101명~150명	21㎡+0.14㎡×(급식학생수-100)	151명~200명	28㎡+0.14㎡×(급식학생수-150)	201명~250명	35㎡+0.14㎡×(급식학생수-200)	251명~300명	42㎡+0.14㎡×(급식학생수-250)	301명~600명	49㎡+0.05㎡×(급식학생수-300)	601명~900명	64㎡+0.04㎡×(급식학생수-600)	901명~1,200명	76㎡+0.04㎡×(급식학생수-900)	1,201명~1,500명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명 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급식학생수	면적																								
50명 이하	14㎡																								
51명~100명	14㎡+0.14㎡×(급식학생수-50)																								
101명~150명	21㎡+0.14㎡×(급식학생수-100)																								
151명~200명	28㎡+0.14㎡×(급식학생수-150)																								
201명~250명	35㎡+0.14㎡×(급식학생수-200)																								
251명~300명	42㎡+0.14㎡×(급식학생수-250)																								
301명~600명	49㎡+0.05㎡×(급식학생수-300)																								
601명~900명	64㎡+0.04㎡×(급식학생수-600)																								
901명~1,200명	76㎡+0.04㎡×(급식학생수-900)																								
1,201명~1,500명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명 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구 분	시설·설비 기준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설비		배선대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에서 90cm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권장사항(100kg·10kg 및 1kg용 각 1대)
10. 계량컵		권장사항(1개 이상)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 온도계 및 온·습도계		권장사항(각 1개)

구 분	시설·설비 기준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권장사항(조리종사자별로 각 한 벌)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그 밖에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구별에 알맞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그 밖에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 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 x 1/2 x 1m ²)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의3제5항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것
6.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1.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교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 ----- 필요한 -----.</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1. (생 략)</p> <p>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p> <p><신 설></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p> <p>1. (현행과 같음)</p> <p>2. ----- ----- 경우에는 -----</p> <p>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p>

현 행	개 정 안
<p>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p>	<p>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 계약</p> <p>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p> <p>② ----- 학습자에게 ----- ----- 배상 -----</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 제12조에 따라 ----- ----- -----</p> <p>④ 제3항에 따라 ----- ----- 그 밖의 ----- ----- ----- ----- -----</p>

현 행	개 정 안
<p>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u>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상</u>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 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p> <p>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p> <p>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조의2(학원시설) ① ----- 교육 환경과-----</p> <p>-----</p> <p>-----</p> <p>-----</p> <p>-----</p> <p>1. -----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 개별실이나 -----, 또한 -----)</p> <p>2. ----- 등이 필요한-----</p> <p>-----</p>

현 행	개 정 안
<p>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u>체육시설(체육장)</u></p> <p>4. - 5. (생 략)</p> <p>6. <u>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u></p> <p>② (생 략)</p> <p>1. - 5. (생 략)</p> <p>6. <u>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u></p> <p>7. <u>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u></p> <p><u><신 설></u></p>	<p>3. ----- ----- <u>학원의 경우에는</u> ----- ---- <u>체육장(체육시설)</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교습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그 밖의</u> -----</p> <p>7. <u>보건위생을 위하여</u> -----</p>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③ <u>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강의실 면적은 ----- ----- ----- ----- 1명 ----- ---- 하여야 한다. ----- <u>편의에</u> ----- ----- <u>사용하되, 최소 10</u> <u>제곱미터 이상</u>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③ 열람실은 45----- ----- ---- 0.8명 ----- ----- <u>배열</u>하여야 한다. ----- ----- <u>편의에</u> ----- ----- -----</p>
<p>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실험·실습실은 단위면적이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u>편의에</u> ----- ----- -----</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p>	<p>⑤ 급수시설은 -----</p>

현 행	개 정 안
<p>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 ----- ---- 제5조제3항에 따른 ----- ----- ----- -----</p>
<p>5. (생 략)</p>	<p>⑥ (현행과 같음)</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⑦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에 ----- --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 ----- -----</p>
<p>②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p>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 ----- ----- ----- ----- -----</p>
<p>③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p>	<p>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p>

현 행	개 정 안
<p>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협·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 ----- ----- --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 ----- ----- ----- -----</p>
<p>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삭 제></p>
<p>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p>

현 행	개 정 안
<p>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p>
<p>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⑥ ----- ----- ----- -----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 -----</p>
<p>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⑦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 ----- ----- 영양사를 1명 이상 -----</p>
<p>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⑧ -----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 -----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명 -----.</p>
<p>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p>	<p>제2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u>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u>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u></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u>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u></p> <p>-----</p>

현 행	개 정 안
<p>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p> <p>② (생 략)</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생 략)</p> <p><신 설></p>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제12조에 따라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 붙여 ----- 등록하거나 알려야 -----.</p> <p>② 학원에서 -----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 등록하거나 알려야 -----</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①학원</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삭</p>

현 행	개 정 안
<p>의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 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p>	<p>제></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따로 정한다.</p>	<p>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 ----- ----- <u>교육규칙으로</u> -----</p>
<p>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u>휴원</u>, <u>폐원</u>으로 하되 <u>휴원 및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u></p>	<p>1. ----- ----- <u>교습정지(개인과의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의 중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정지와 -----</u>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u>상당하다고</u>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3. ----- ----- <u>많다고</u> ----- ----- -----.</p>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p>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 등)</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0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 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 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 성할 수 있다.</p>	<p>제10조(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 ----- ----- 우수학원과 교습소를 지정 하여 지원·육성-----.</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 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 시행과 그 밖의 ----- -----.</p>

관계 법령 발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절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
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
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
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 삭제 <2008.3.28>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② 삭제 <1999.5.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및 등록·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2010.5.17>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은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31>

1.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⑥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⑦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31>

⑨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3.31>

⑩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4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